

☎04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46길 37(이촌동) 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6560/전송(02)790-8911
보험국장 김기성[6574] / 보험급여팀장 고영옥[6572] / 팀원 이승아[6560] / e-mail: kma6571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3-9856호

시행일자 2024. 12. 2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건강보험 고시 등 안내 (2024. 11. 25. ~ 12. 2.)

- 우리협회는 보건복지부 고시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등을 비롯한 건강보험 관련 주요 안내사항을 의협 홈페이지(건강보험 고시안내)에 게재하고 매주 단위로 게시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.
- 이에, 2024년 11월 25일 ~ 12월 2일까지 「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(www.kma.org) > 공지·뉴스 > 건강보험 고시 안내」에 게시된 고시 관련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,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안내사항을 반드시 상시 확인하여 주시고, 귀 회 소속 회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연번	안내 일자	고시 번호	제 목 및 주요내용
1	2024. 11. 27.	심평원 공고 제2024-264호	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○ [신설] 신경모세포종에 'Dinutuximab beta ± Isotretinoin' 병용요법 (1차, 관해유지요법) 신설 외 3건 ○ [변경] 직결장암에 'Encorafenib Cetuximab' 병용요법(2차 이상, 고식적요법)의 Cetuximab 격주요법 관련 문구 추가 외 2건 ○ 시행일: 2024. 12. 1.
2	2024. 11. 27.	제2024-239호	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(고시 제2024-234호에 대한) 정정고시 안내 ○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234호, 2024.11.20.)의 별제1 약제 중 3개 품목 상한금액 정정(환인쿠에타핀서방정) ○ 시행일: 2024. 12. 1.
3	2024. 11. 27.	제2024-240호	「치료재료 급여·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 일부개정 안내 ○ (치료재료 신규등재) 본인일부부담 품목, 비급여 품목, 행위료 포함 품목,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 신설 ○ (치료재료 상한금액 조정등) 일부품목 삭제, 일부 품목 제조사 등 변경 ○ 시행일: 2024. 12. 1.
4	2024. 11. 28.	제2024-242호	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 안내 ○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[심뇌혈관질환검사] '누-400 혈액점도검사'란 주석 삭제 ○ 시행일: 2024. 12. 1.

연번	안내 일자	고시 번호	제 목 및 주요내용
5	2024. 11. 28.	제2024-243호	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 안내 ○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[별표 2] 제1호다목의 '미세혈관 자동문합기, '비침습적 지혈용' 적용일, 평가완료차수, 평가주기 변경 및 '슬관절강내 주입용-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'의 평가주기 변경 ○ 시행일: 2024. 12. 1.
6	2024. 11. 29.	제2024-244호	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 일부개정 안내 ○ [별표1]에 '별지1' 기재 약제 신설 - 비대성 심근병증 치료제 'Mavacamten 경구제(품명: 캄지오스캡슐) 등 ○ 시행일: 2024. 12. 1.
7	2024. 11. 29.	제2024-246호	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약제)」 일부개정 안내 ○ 개정항목: 총 2항목(신설1, 변경1) - 비대성 심근병증 치료제 'Mavacamten 경구제(품명: 캄지오스캡슐 2.5밀리그램 등) 등 ○ 시행일: 2024. 12. 1.
8	2024. 12. 2.	제2024-247호	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 안내 ○ 검체검사 질 가산 보수교육 이수 적용기간 확대(*시행일: 2025.4.1.) ○ 결핵균 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-감마[정밀면역검사] 급여대상 확대 ○ 수술중 늑간신경 냉각진통요법 행위 재분류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○ 삼차원 빈맥지도화를 이용한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급여대상 확대 ○ 시행일: 2024. 12. 1.
9	2024. 12. 2.	제2024-248호	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 안내 ○ 별지 서식(제2호, 제3호서식) 명칭 변경(요양급여 승인신청서→요양급여 신청서) ○ 위원회 명칭 변경(요양급여 심의위원회→사전심사분과위원회) ○ 별지 서식 현행화(별지 제1호~제3호 서식) ○ 시행일: 2024. 12. 1.

※ 건강보험 고시 안내(URL) : <https://www.kma.org/notice/sub16.asp> 끝.

대한의사협회장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.”



수신처 : 각 시도지사회장, 각 학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, 각과 개원의협의회회장, 한국여자의사회장, 대한병원장협의회회장